

영등포구의회
제 19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79호로 2015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재해로 손상을 입은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용 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시행 여부 판단 등(안 제3조, 제4조)
- 나.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안 제8조)

라.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안 제9조)

마.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경비지원(안 제10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5. 7. 30 ~ 8. 1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대책법」 및 국민안전처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제정 조례안임.

○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부터 제12조(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을 규정하고
-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와 인원 등을 지원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또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과 위험도 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

○ 우리나라의 연간 지진 발생 횟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한반도가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진 발생 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지진 발생현황(기상청)

연도	규모 3.0이상 발생횟수	유감 횟수	총발생 횟수	최대 진도
2010년	5	5	42	3.3(울산 동구)
2011년	14	7	52	4.0(인천백령도)
2012년	9	4	56	3.9(전북 무주군)
2013년	18	15	93	4.9(인천백령도, 전남 신안군)
2014년	8	11	49	5.1(충남 태안군)
2015년 8월까지	3	3	31	3.7(제주 서귀포시)

관 련 법 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2007.10.17., 2011.6.7., 2013.6.12.>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 10의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